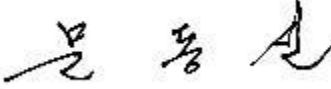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6년 3월 29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32호

## 군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의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의장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고문이 제4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고문은 군산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3조(청렴서약)** 제2조에 따라 고문에 위촉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 가.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행위
  -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그 밖의 이유로 법률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직무 등)**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과 관련한 법령 자문
2.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 자문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 사건(고소·고발을 포함한다)등의 자문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제6조(자문실적 관리)** 의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의장은 고문의 위촉기간, 운영현황,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고문에 대한 수당은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위 축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군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

군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군 산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2호 서식]

## 청 렬 서 약 서

주 소 :

성 명 :

위촉기간 :

상기 본인은 군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됨에 동의하며 법률고문 등의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고문 준수 사항

1. 군산시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2.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행위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금지
5.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고 문 (인)

군산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자 문 실 적 부

자 문 사 항				회 신 결 과		
연월일	자문방법	의뢰인	의뢰내용	연월일	고문성명	회신내용

※ 자문방법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 기재

※ 의뢰내용 및 회신내용은 필요시 별지작성 가능

군산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6년 3월 29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13호

**군산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

군산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통 선*



2016년 3월 29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14호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6 - 397호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 공익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센터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어 사용료 할인조항을 감면조항으로 탄력적 조정
- 국제회의는 국내학술대회로부터 파생되는 경우가 많고 국내학술 대회 등 대규모 국내회의도 국제회의 못지않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전시장 리모델링에 따른 회의실 신설로 회의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실 사용 기준으로 호수 재조정으로 군산시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운영의 효율성 향상

#### 2. 주요내용

- 사용료 할증 및 할인조항을 감면조항으로 조정 (제6조2항)
- 전시장내 회의실 신설로 인한 사용료 추가 적용 및 호수별로 세부 조정 (제6조 별표1)
- 전시장 리모델링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임대료 조정 (제6조 별표2)
- 운영지원 조항의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 등”으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 확대 (제8조2항)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우) 573-703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063-454-2672, FAX 454-265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전략기획계  
(☎ 063-454-26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각호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를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 등의”로,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을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 등을”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용료 등) ① (생 략)</p> <p>② <u>시장은 시설의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실 및 전시관 사용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u></p> <p>&lt;신 설&gt;</p>	<p>제6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 음)</p> <p>② <u>시장은 각호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u>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u>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u></li> <li>3. <u>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u></li> </ol> <p>③ <u>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8조(운영지원) ① (생 략)</p> <p>② <u>시장은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제8조(운영지원)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u>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 등의 -----</u> ----- ----- <u>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 등을 -----</u> ----- -----.</p>

## [별표 1]

## 센터 사용료

(단위 : 천원)

구 분	면적 (㎡)	사 용 료(부가세 별도)						초 과 사용료 (시간당)	
		09:00~ 12:00 (오 전)	13:00~ 17:00 (오 후)	18:00~ 21:00 (야 간)	09:00~ 17:00 (전 일)	13:00~ 21:00 (반 일)	09:00~ 21:00 (종 일)		
컨벤션홀	전체	1,825	1,970	2,627	1,890	4,136	4,459	6,041	603
	홀-1(분할)	780	842	1,123	808	1,768	1,906	2,582	258
	홀-2(분할)	1,045	1,128	1,504	1,082	2,368	2,553	3,459	345
중회의실	201	180	194	259	186	407	439	595	59
소회의실	202, 205, 207, 209 중 1실	47	50	67	48	105	113	154	15
	204	73	78	105	75	165	178	241	24
	206	58	62	83	59	130	140	190	19
	203, 208	94	100	134	96	210	226	308	30
전시관회의실	101	312	333	446	319	700	754	1,025	102
통합실 운영	202호와 203호, 208호와 209호 통합사용은 각호 사용료 합산금액 적용								
사용료 할인	101호를 전시기간중 전시주최자가 사용시 50% 할인 적용								
유의사항	·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 【별표2】

## 전시관 사용료

구		분	사용요율	비 고	
장소별	산업전시관(3,000㎡)		550원/㎡	1일 기준	
	옥외전시장(7,300㎡)		150원/㎡	1일 기준	
	실내로비(1,219㎡)		2,000원/㎡	사용면적당	
할 인 할 증률	월 별 차 등률	1, 2, 7, 8, 12월	30% 할인		
		3월	20% 할인		
	규모별 차 등률	1/2미만 사용시	20% 할증		
		옥내외 전체사용시	15% 할인		
	기간별 차 등률	15일~1개월 미만	10% 할인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0% 할인		
		2개월 이상	30% 할인		
	시간외 사용료	기간별 차 등 적용	초과시간당	10% 가산	
	유의 사항	·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 군산시 공고 제 2016 - 407 호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3 월 4 일

# 군산시장

## 군산시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표준안)」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심사위원회 운영사항을 보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절차를 강화함 (안 제8조)
- 나. 감염병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및 첨부자료를 추가함 (안 제10조, 별표1·2호, 별지 제3호서식)
- 다. 공무국외여행 연락유지 등 강화(안 제14조)
  - 여행 주관부서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과 연락유지
- 라. 공무국외여행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서식 신설(안 제16조)
  -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 마. 공무국외여행 규칙(표준안), 군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반영 등 보완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5조,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4일까지 군산시장(참조:새만금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새만금국제협력과

(2) 전화 : 063-454-2622

(3) FAX : 063-452-815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새만금국제협력과 국제교류계(☎ 454-26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를 “제2조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최소화하여”를 “최소화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외에서”를 “외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둔다”를 “두어 운영하되, 심사대상에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제14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주관부서와의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업무수행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를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주관부서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과의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주관부서의 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군산시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해외연수자료실”을 “허가 부서의 장이 정하는 정보유통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하고,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로 한다.

[별표1] 공무국외여행허가절차의 “공무국외여행 방침”을 “공무국외여행방침수립”으로 하고, 공무국외여행방침 중 “상급자”를 “시장”으로 “부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서울행정시스템 공무국외여행허가(심사)신청 중 “(G.T.R)”을 “(G.T.R 등)”로 하며, 공무국외여행심사 및 허가승인 중 심사내용의 “필요성.”을 “필요성”으로 하고, “여행경비 등”을 “여행경비”로 하며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을 신설하고, “출국 및 업무수행”을 “출장”으로하고, 출국 및 업무수행 중 현지 활동의 “허가권자에게”를 “주관부서의 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로 하고, “귀국”을 “귀국보고”로 하고 귀국 중 귀국보고서 제출에서 “보고 후”를 “보고,”로 하고,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해외연수자료실에 게시”를 “허가부서의 장이 정하는 정보 유통망에 등록”으로 하며, “구정”을 “시정”으로 한다.

[별표2]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의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여행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의 여행기간 중 “200”을 “20”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의 첨부자료에 다음 내용을 신설한다.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연번	허가일시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국	방문기관	여행인원	여행경비(천원)	
							총액	1인당

※ 여행 목적란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u>규정</u> 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규칙</u> ----- ----- -----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u>규정</u> 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국외여행자에게는 이 <u>규정</u>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u>규정</u> 을 적용하려면 제15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 3. (생략)	제2조(적용범위) ① ---- <u>규칙</u>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u>규칙</u> ----- ----- -----.
제3조(허가권자 등) ① <u>제2조</u> 따라 공무원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장(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③ (생략)	제3조(허가권자 등) ① <u>제2조에</u> ---- ----- ----- ----- -----.
제6조(사전협의 등) ① (생략)  ②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원국외여행은 적정규모로 <u>최소화</u> 하여야 하고,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6조(사전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최소화</u> 하여야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u>외에서</u>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p> <p>2. ~ 5. (생략)</p>	<p>제7조(설치) ----- ----- ----- -----.</p> <p>1. ----- ----- <u>외에</u> -----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p> <p>② ~ ⑤ (생략)</p>	<p>제8조(위원회 구성) ① ----- ----- ----- ----- <u>두어 운영하되, 심사대상에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서 제외한다.</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②·③ (생략)</p>	<p>제10조(심사기준) ①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u></p> <p>②·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연락유지 등) ① <u>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주관부서와의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업무수행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u></p> <p>② ~ ④ (생략)</p>	<p>제14조(연락유지 등) ① <u>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주관부서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과의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주관부서의 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u>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군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군산시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해외연수자료실에 등록하고,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 ④ (생략)</p>	<p>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 ----- ----- ----- ----- 허가부서의 장이 정하는 정보 유통망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사후관리 등) ① (생략)</p> <p>② <u>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u></p>	<p>제16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지정하고,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p>

## 신 · 구조문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1]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국외여행 방침</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주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침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장 포함 : <u>상급자</u></li> <li>· 부서장 이하 : <u>부서장</u></li> </ul> </li> <li>○ 허가부서 등과 사전협의</li> <li>○ 심사 및 허가기준 내부자율점검 및 검토의견 제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새울행정시스템 공무국외여행허가(심사) 신청</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주관부서 ⇒ 허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li> <li>○ 주관부서의 장 전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첨부서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무국외여행계획서</li> <li>2. 여행자 수칙</li> <li>3. 항공운임증명서(G.T.R)</li> <li>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li> </o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국외여행심사 및 허가승인</p> </div> <p style="text-align: center;">(허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대상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li> <li>· 비 대 상 : 허가부서의 장</li> </ul> </li> <li style="padding-left: 20px;">(부서 검토 의견 분석)</li> <li>○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목적 및 <u>필요성</u>,</li> <li>· 여행자, 여행지</li> <li>· 여행기간, <u>여행경비</u> 등</li> <li>· &lt;신설&gt;</li> </ul> </li> <li>○ 허가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 후 전결규정에 따라 허가</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1]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국외여행방침수립</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주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침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장 포함 : <u>시장</u></li> <li>· 부서장 이하 : <u>부시장</u></li> </ul> </li> <li>○ -----</li> <li>○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새울행정시스템 공무국외여행허가(심사) 신청</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주관부서 ⇒ 허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 <li>○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첨부서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현행과 같음)</li> <li>3. ----- (G.T.R 등)</li> <li>4. 여행방침 사본 -----</li> </o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국외여행심사 및 허가승인</p> </div> <p style="text-align: center;">(허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 <li>· -----</li> <li>· -----</li> <li>· -----</li> <li style="padding-left: 20px;">(----- )</li> <li>○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필요성</u></li> <li>· -----</li> <li>· 여행기간, <u>여행경비</u></li> <li>· <u>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u> 등</li> </ul> </li> <li>○ -----</li> <li>· -----</li> </ul>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auto; width: 80%;">출국 및 업무수행</div> <p style="text-align: center;">(주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자 소양교육 실시</li> <li>○ 여행 출발사항을 허가 부서에 통보(당일)</li> <li>○ 보안서약서제출 (출국 3일전)</li> <li>○ 현지활동(연락유지 등)</li> <li>. 특수한 사정발생 시 <u>허가권자에게</u>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이행</li> <li>○ 해외여행자 수칙 준수</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auto; width: 80%;">귀 국</div> <p style="text-align: center;">(주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국보고서 제출</li> <li>- 전결규정에 따라 <u>보고후</u> 귀국후 30일 이내</li> <li>. 허가권자에게 보고</li> <li>.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u>해외연수자료실에</u> 게시</li> <li>. 부서 소관 해외사례 <u>구정</u> 업무 반영</li> <li>. 다른 부서 소관 해외사례 해당부서 통보</li> </ul>	<p>[별표1]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auto; width: 80%;">출 장</div> <p style="text-align: center;">(주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 <li>○ -----</li> <li>○ -----</li> <li>○ 현지활동(연락유지 등)</li> <li>. ----- <u>주관부서의 장</u> 또는 <u>재외공관장에게</u> -----</li> <li>○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auto; width: 80%;">귀국보고</div> <p style="text-align: center;">(주관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국보고서 제출</li> <li>- -----<u>보고</u> 귀국 후 30일 이내</li> <li>. -----</li> <li>. <u>허가부서의 장이</u> 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li> <li>. ----- <u>시정</u> -----</li> <li>. -----</li> </ul>
<p>[별표2]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p> <p>1. ~ 5.(생략)</p> <p>&lt;신 설&gt;</p>	<p>[별표2]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p> <p>1. ~ 5.(현행과 같음)</p> <p>6. <u>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li> <li>○ 현지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li> <li>○ 공무국외여행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li> </ul>

## 신 · 구조문대비표(별지)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p> <p>1. 여행개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여행목적</td> <td colspan="7"></td> </tr> <tr> <td>여행기간</td> <td colspan="7">200 . . ~ 200 . . ( 일간)</td> </tr> <tr> <td>여행국</td> <td colspan="7"></td> </tr> <tr> <td>방문기관</td> <td colspan="7"></td> </tr>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여행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속</td> <td style="text-align: center;">직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령</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여행경비(천원)</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담기관</td> </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2. ~ 4. (생략)</p>	여행목적								여행기간	200 . . ~ 200 . . ( 일간)							여행국								방문기관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p>[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p> <p>1. 여행개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여행목적</td> <td colspan="7"></td> </tr> <tr> <td>여행기간</td> <td colspan="7">20 . . ~ 20 . . ( 일간)</td> </tr> <tr> <td>여행국</td> <td colspan="7"></td> </tr> <tr> <td>방문기관</td> <td colspan="7"></td> </tr>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여행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속</td> <td style="text-align: center;">직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령</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여행경비(천원)</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담기관</td> </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2. ~ 4. (현행과 같음)</p>	여행목적								여행기간	20 . . ~ 20 . . ( 일간)							여행국								방문기관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여행목적																																																																																																																																																							
여행기간	200 . . ~ 200 . . ( 일간)																																																																																																																																																						
여행국																																																																																																																																																							
방문기관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여행목적																																																																																																																																																							
여행기간	20 . . ~ 20 . . ( 일간)																																																																																																																																																						
여행국																																																																																																																																																							
방문기관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p>[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p> <p>I. ~ III.(생략)</p> <p>IV. 첨부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국외여행 계획서</li> <li>○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li> <li>-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li> <li>-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 회의 장면 사진 등</li> </ul> </li> <li>○ &lt;신 설&gt;</li> </ul> <p>※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p>	<p>[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p> <p>I. ~ III.(현행과 같음)</p> <p>IV. 첨부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 <li>○ -----</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 <u>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u></li> <li>- <u>(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u></li> </ul> </li> <li>※ -----</li> <li>-----</li> <li>-----</li> <li>-----</li> </ul>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p data-bbox="687 219 1257 259">[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상</p> <table border="1" data-bbox="681 327 1399 551"> <thead> <tr> <th rowspan="2">연번</th> <th rowspan="2">허가일시</th> <th rowspan="2">여행목적</th> <th rowspan="2">여행기간</th> <th rowspan="2">여행국</th> <th rowspan="2">방문기관</th> <th rowspan="2">여행인원</th> <th colspan="2">여행경비(천원)</th> </tr> <tr> <th>총액</th> <th>1인당</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 data-bbox="699 584 1358 656">※ 여행 목적란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p>	연번	허가일시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국	방문기관	여행인원	여행경비(천원)		총액	1인당																											
연번	허가일시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국	방문기관	여행인원	여행경비(천원)																									
		총액	1인당																																				

**군산시 공고 제2016 - 487호**

『군산시 근대문화도시조성 조례』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군 산 시 장****군산시 근대문화도시조성 제정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선정된 근대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근대문화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근대문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 근대문화도시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은 전문지식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다양한 개발방안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근대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 근대문화도시 자문단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 제18조)

## 3. 의견제출

군산시 근대문화도시조성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 나. 의견 제출처 :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번 (전화454-3310, 팩스454-3269)

### 다. 의견 제출방법 : 제한없음(전화, 팩스, 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454-33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근대문화도시조성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군산시 근대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정) 2016.00.00 조례 제0000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근대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근대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품격있는 근대화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근대화도시”라 함은 개항기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시설, 역사 유적 등 우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정체성, 더불어 생활상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실현을 통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문화예술 · 문화산업 · 역사 등 특색있는 사업 발굴, 조성
2.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화· 예술의 보존 및 활용
3. 근대문화가 가지고 있는 항일· 항쟁의 역사적 사실 연구 개발 및 활동 등

**제4조(적용범위)** 근대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대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되 근대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대와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근대문화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더불어 잘사는 시민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2장 근대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근대화도시 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시의 역사적 근대화유산을 보존·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근대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근대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문화의 정착)** ①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근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근대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근대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근대화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근대화도시 정책의 추진체계

**제10조(근대화도시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대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1조(시민의 의견수렴)**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근대화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과 근대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2조(근대화도시자문단 구성·운영)** ① 근대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근대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군산시근대화도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자문단 운영 기간은 근대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군산시 근대화도시조성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산시의회 의원, 근대화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자문단은 근대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연구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근대화도시조성 계획수립에 대한 자문
2. 근대화도시 관련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
3. 근대화도시 시책의 연구 및 개발
4.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이를 위한 자료발간·보급 등의 홍보
5.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6. 그 밖의 근대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⑦ 자문단 운영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 ③ 근대화도시 정책·성과 및 향후 발전계획 위원회 포럼을 개최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 서기는 근대화시설계장으로 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자문에 대해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공고 제 2016-489호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 입법예고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군 산 시 장

#### 1. 개정이유

- ◇ 시민들의 여가문화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해 도심속 건전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는 군산 야외수영장의 시설 이용료 규정을 둠으로써
-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개정법규명

-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 1)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사용시간 추가 - (안 “제9조제⑦항 ”)
- 2)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 일부 개정 - (안 “제12조제②항 ”)

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일부 신설 - (안 “제 10조①항 ”)

1) 군산야외수영장 이용료 징수규정 신설 - (안“별표7”)

####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73-430 군산시 번영로 281번지 군산시 체육진흥과

(전화:454-5573, FAX:454-5569)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체육진흥과 운영담당(454-5573)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표준시설을 갖춘 경기장” 을 “표준시설을 갖춘 경기장과 군산시 소룡동 1666번지 일원의 군산 야외수영장”으로 한다.

제9조에 제7항 “군산 야외수영장의 운영시간은 10:00~19:00까지로 하며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를 신설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6” 을 “별표 7” 로 별표 7를 신설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영장·군산실내배드민턴장” 을 “수영장·군산실내 배드민턴장·군산야외수영장” 으로 한다.

별표 7은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1” 내지 “별표6” 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 시장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인할 수 있다.

- ① (생략)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이용료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별표1” 내지 “별표7” 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  
-----  
-----.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수영장·군산실내 배드민턴장·군산야외수영장-----  
-----.

[별표 7]

## 군산야외수영장이용료

(단위:원)

구 분				비 고
유 아	어린이	청소년	어 른	
2,000	3,000	4,000	5,000	1회(1명)

- 경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용료는 해당요금의 50%를 감면한다.
- “단체”란 2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요금의 50% 징수한다.
- 단, 중복 할인은 할 수 없다”

군산시공고 제2016-493호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금고의 수)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2015.12.24.)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 하고,
-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시금고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관련 조항 추가 및 변경 : 특별회계란 “ 「지방공기업법」 ”을 “법 제9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으로 하고, 기금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제133조” 를 “제142조”로 수정(안 제2조제1항 제3,4호)
- 나. 금고 약정서 체결 시 “기명 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 (안 제2조제1항 제6호)
- 다.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안 제3조제2항 신설)

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토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마.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

(안 제10조제1항 개정)

바.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 (안 제10조제2항 신설)

사.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내역 공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 내역까지 공개(안 제10조제3항 신설)

아.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변경함 【안 별표】

-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평가항목 조정
-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변경(행자부예규 준용)

- 붙 임 : 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징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군산시청 징수과 (전화 063-454-2511, FAX 063-453-9183)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징수과 주무관 임정숙(454-2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 군산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6. . . .

제 출 자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자 : 징 수 과 장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자부예규) 개정에 따른 금고의 수 조정,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 조정, 협력사업비 공개 등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시금고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관련 조항 추가 및 변경 :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을 “법 제9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기금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제133조” 를 “제142조”로 수정(안 제2조제1항 제3,4호)

나. 금고 약정서 체결 시 “기명 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 (안 제2조제1항 제6호)

다.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안 제3조제2항 신설)

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토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마.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 (안 제10조제1항 개정)

바.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 (안 제10조제2항 신설)

사.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내역 공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 내역까지 공개(안 제10조제3항 신설)

아.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변경함 【안 별표】

-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평가항목 조정
-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변경(행자부예규 준용)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102조
- (2)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자부예규 30호, 2015.12.24.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2016. 3월중(20일간)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을 “**“특별회계”란 법 제 9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33조**”를 “**제 142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명**”을 “**서명 또는 기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출연금 등 처리방법)”을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를 “**시장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

[별표 1] (개정 2016. . .)

## 군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계	32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	6	
	- 국내평가기관	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2)		
- <b>총자본비율</b>	9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9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7		
- 자기자본이익율	6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2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8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19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4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2조(용어의 정의)</b>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u>특별회계</u>"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p> <p>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 하는 자금을 말한다.</p> <p>5. (생략)</p> <p>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군산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p> <p>7.·8. (생략)</p>	<p><b>제2조(용어의 정의)</b> ①-----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특별회계</u>"란 법 제9조제2항 및 「<u>지방공기업법</u>」----- ----- ----- ----- ----- -----.</p> <p>4. ----- ----- ----- <u>제142조</u> ----- ----- -----.</p> <p>5. (현행과 같음)</p> <p>6. ----- ----- ----- ----- <u>선</u> <u>명 또는 기명</u> ----- -----.</p> <p>7.·8. (현행과 같음)</p>

**제3조(금고지정방법) ① (생략)**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단,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② (생략)**

<신설>

**제10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금고**

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제3조(금고지정방법)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①**

시장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  
-----  
-----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신 설>

별표

현 행		
항 목	세부항목	배점
계		100
		3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9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로 평가 - 고정이익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2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1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22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6)
		18

시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  
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  
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  
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  
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별표

개 정 안		
항 목	세부항목	배점
계		100
		3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0) 6 4
	나. (현행과 같음) - <b>총자본비율</b> (안정성, 9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9점)로 평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2) 9 7 6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현행과 같음)	(6)
	나. (현행과 같음)	(5)
	다. (현행과 같음)	(4)
	라. (현행과 같음)	(3)
		18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나. (현행과 같음)	(7)
	다. (현행과 같음)	(7)
		22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5) (7) (7)
		19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 을 강화하여 평가	(7)
		(7)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u>10</u>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 <신설>	(5) (5)			<u>9</u>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 협력사업 계획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 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 으로만 평가	(5) (4)			

**군산시 공고 제 2016 - 495호**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3 월 15 일

**군산시장****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민선6기 핵심공약인 어린이행복도시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설치 및 재정지원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의 신설(제15조(사무실))

-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나. 조의 신설(제19조(재정지원))

-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린이행복도시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4일까지 군산시장(참조:어린이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

(2) 전화 : 063-454-4162

(3) FAX : 063-454-415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 어린이정책계(☎ 454-41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사무실)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15조부터 제17조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린이행복도시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u>제15조(사무실)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u>
<u>제15조(위원의 해촉)(생략)</u>	<u>제16조(현행과 같음)</u>
<u>제16조(간사)(생략)</u>	<u>제17조(현행과 같음)</u>
<u>제17조(수당 등)(생략)</u>	<u>제18조(현행과 같음)</u>
<신설>	<u>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린이행복도시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제18조(시행규칙)(생략)</u>	<u>제20조(현행과 같음)</u>

군산시 고시 제2016-28호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6년 3월 일

#### 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8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대	596,163	증)1,601	597,764	군산고141 ('14.12.26)	

#####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대로3-48호선 외 변경없음 / ( )안의 연장은 대상지내 연장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750 (750)	중로2-65	조촌동 664번지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변경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11 (811)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도로	-		

※ 주차장,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없음

#### I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게재 생략

-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군산시 고시 제2016 - 34호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협의 승인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협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3

## 군 산 시 장

##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5-0003호 (2016. 3. 3)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주소 성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시 설림길 11)
- ③ 허가목적 : 항로표지 등부표 4기
- ④ 허가장소 : 붙임문서 참조
- ⑤ 면 적 : 11,600m<sup>2</sup>
- ⑥ 허가기간 : 2015. 7. 10. ~ 시설물 존치시 까지
- ⑦ 변경사항

표지명	구조	위치(WGS-84)		면적*(m <sup>2</sup> )	비고
		현행	변경		
선유도어장 2호등부표	등부표 (홍원통형)	N 35° 50' 42" E 126° 26' 18"	변경 없음	2,900	등화장치 1식
선유도어장 3호등부표	등부표 (녹원통형)	N 35° 50' 12" E 126° 26' 33"	변경 없음	2,900	등화장치 1식
선유도어장 4호등부표	등부표 (홍원통형)	N 35° 49' 55" E 126° 26' 16"	N 35° 49' 53.2" E 126° 26' 02.0"	2,900	등화장치 1식
선유도어장 5호등부표	등부표 (녹원통형)	N 35° 49' 31" E 126° 25' 47"	변경 없음	2,900	등화장치 1식

군산시 고시 제2016-35호

## 군산 임피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군산 임피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과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 고시하며, 군산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일

군 산 시 장

### □ 농공단지 지정(변경) 사항

####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군산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569-1번지 일원
- 면 적 : 239,156.1m<sup>2</sup>

####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 낙후된 군산시 임피면 일원에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
-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규 고용창출 및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함

####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군 산 시 장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 개발기간

구 분	개 발 기 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개발기간	2011년 ~ 2013년	증) 5개월	2011년 ~ 2014년 5월	

○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로 일괄 수(위)탁 계약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시행

##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표준산업 분류코드	유 치 업 종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제조업(C)	합 계	176,243.4		176,243.4	10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4,394.7	감)2,864.2	41,530.5	23.6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920.8	감)10,519.6	16,401.2	9.3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2,329.4	감)16,387.5	45,941.9	26.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2,598.5	감)8,025.2	34,573.3	19.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0	증)37,796.5	37,796.5	21.4	
33	기타 제품 제조업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거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은 제외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239,156.1		239,156.1	100.0	
○ 산업시설용지	176,243.4		176,243.4	73.7	
· 단지조성	176,243.4		176,243.4	73.7	
○ 지원시설용지	5,243.6		5,243.6	2.2	
· 공동이용시설	1,757.1		1,757.1	0.7	
· 저 류 지	2,851.1		2,851.1	1.2	
· 배 수 지	635.4		635.4	0.3	Q=235m <sup>3</sup> /일
○ 공공시설용지	57,669.1		57,669.1	24.1	
· 도 로	26,674.5		26,674.5	11.2	6조 1,734m
· 녹 지	26,619.6		26,619.6	11.1	
· 배 수 로	4,375.0		4,375.0	1.8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 교통시설계획

## ○ 도로시설 총괄 (변경없음)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합계	6	1,734	22,807	-	-	-	1,	246	4,897	5	1,488	17,910
기정	대로		-	-	-	-	-	-	-	-	-	-	-
기정	중로	5	1,553	22,084	-	-	-	1	246	4,897	4	1,307	17,187
기정	소로	1	181	723	-	-	-	-	-	-	1	181	723

※기정 : 접도구역 면적 4,212m<sup>2</sup> 및 도시계획도로 22m<sup>2</sup>를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면적에 포함

## ○ 도로시설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종별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137	15~20	국지도로	246	532-9도	563-1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기정	중로	3	66	12~15	국지도로	486	563-1답	569-11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기정	중로	3	67	14	국지도로	321	563-3답	560-5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기정	중로	3	68	13	국지도로	413	589구	561-2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기정	중로	3	69	12	국지도로	87	143-4임	147-2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기정	소로	3	743	4	국지도로	181	143-4임	154-1전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 ■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 ○ 수도공급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임피면 축산리 154-2번지 일원	635.4		635.4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 공간시설계획

○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6,619.6		26,619.6		
기정	85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596번지 일원	3,553.6		3,553.6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86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03번지 일원	316		316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87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35번지 일원	2,586		2,586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88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38번지 일원	769		769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89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0번지 일원	324		324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0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09번지 일원	530.2		530.2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1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1번지 일원	1,074		1,074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2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0번지 일원	479		479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3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20번지 일원	6,237		6,237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4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7번지 일원	3,386		3,386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기정	95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6번지 일원	7,364.8		7,364.8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 방재시설계획

○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임피면 축산리 563-11번지 일원	2,851.1		2,851.1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7.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금 액 (백만원)	비 고
임피농공단지 단지조성비	239,156.1m <sup>2</sup>	1,447	국비 1,085 지방비 362

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에 근거하여 지원 함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별첨 (변경없음)

##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련도서는 군산시 투자지원과(☎ 063-454-27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군산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 성 명 : 군산시장

○ 주 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사업의 목적

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나. 낙후된 군산시 임피면 일원에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

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규 고용창출 및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함

○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비 고
면 적	239,156.1	176,243.4	2,392.5	33,900.6	26,619.6	
구 성 비	100	73.7	1.0	14.2	11.1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569-1번지 일원

나. 면 적 : 239,156.1m<sup>2</sup>

5.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공영개발(군산시장)

○ 시행기간 :

구 분	시 행 기 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시행기간	2011년 ~ 2014년 5월		2011년 ~ 2014년 5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239,156.1		239,156.1	100	-
녹지지역	소계	-	-	-	-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	-	-	-
관리지역	소계	239,156.1		239,156.1	100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239,156.1		239,156.1	100
농림지역	-	-	-	-	-

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6	임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임피·축산 560-1번지일원	239,156.1		239,156.1	2012.5.4 군산시고시 2012-57호	

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로 (변경없음)

○ 총괄표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합계	6	1,734	22,807	-	-	-	1	246	4,897	5	1,488	17,910
	대로		-	-	-	-	-	-	-	-	-	-	-
	중로	5	1,553	22,084	-	-	-	1	246	4,897	4	1,307	17,187
	소로	1	181	723	-	-	-	-	-	-	1	181	723

※ 도로면적 : 27,041m<sup>2</sup> (접도구역 4,212m<sup>2</sup> 및 도시계획도로 22m<sup>2</sup> 포함)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종별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합 계						1,734						
기정	중로	2	137	15~20	국지도로	246	532-9도	563-1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기정	중로	3	66	12~15	국지도로	486	563-1답	569-11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기정	중로	3	67	14	국지도로	321	563-3답	560-5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기정	중로	3	68	13	국지도로	413	589구	561-2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기정	중로	3	69	12	국지도로	87	143-4임	147-2답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기정	소로	3	743	4	국지도로	181	143-4임	154-1전	일반도로	구역내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2) 수도공급설비(배수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임피면 축산리 154-2번지 일원	635.4		635.4	군산시 고시 제2011-46호 (11.6.23)	

3) 녹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6,619.6		26,619.6		
기정	85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596번지 일원	3,553.6		3,553.6	2012.5.4 군산시 고시 2012-57호	
기정	86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03번지 일원	316		316	2012.5.4 군산시 고시 2012-57호	
기정	87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35번지 일원	2,586		2,586	2012.5.4 군산시 고시 2012-57호	
기정	88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38번지 일원	769		769	2012.5.4 군산시 고시 2012-57호	
기정	89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0번지 일원	324		324	2012.5.4 군산시 고시 2012-57호	
기정	90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09번지 일원	530.2		530.2	2012.5.4 군산시 고시 2012-57호	
기정	91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1번지 일원	1,074		1,074	2012.5.4 군산시 고시 2012-57호	
기정	92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0번지 일원	479		479	2012.5.4 군산시 고시 2012-57호	
기정	93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20번지 일원	6,237		6,237	2012.5.4 군산시 고시 2012-57호	
기정	94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7번지 일원	3,386		3,386	2012.5.4 군산시 고시 2012-57호	
기정	95	녹지	완충녹지	축산리 646번지 일원	7,364.8		7,364.8	2012.5.4 군산시 고시 2012-57호	

## 4)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임피면 축산리 563-11번지 일원	2,851.1		2,851.1	군산시 고시 제2011-46 호(11.6.23)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위치	면적(㎡)				
					당초	변경			
합계	-	-	-	-	-	-	-		
1	A	18,000	기정	A1	축산리 597번지 일원	635.4	635.4	수도공급설비	
			기정	A2	축산리 596번지 일원	3,553.6	3,553.6	완충녹지	
			기정	A3	축산리 601번지 일원	7,766.5	7,766.5	공업용지	·합병·분할가능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 분할은 최소 1,650㎡이상 허용)
			기정	A4	축산리 602번지 일원	5,617.3	5,617.3	공업용지	
			기정	A5	축산리 603번지 일원	316.0	316.0	완충녹지	
	B	43,148	기정	B1	축산리 635번지 일원	2,586	2,586	완충녹지	
			기정	B2	축산리 604번지 일원	4,902.3	4,902.3	공업용지	·합병·분할가능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 분할은 최소 1,650㎡이상 허용)
			기정	B3	축산리 605번지 일원	6,713.4	6,713.4	공업용지	
			기정	B4	축산리 606번지 일원	7,873.7	7,873.7	공업용지	
			기정	B5	축산리 607번지 일원	9,995.0	9,995.0	공업용지	
			기정	B6	축산리 608번지 일원	9,991.2	9,991.2	공업용지	
			기정	B7	축산리 638번지 일원	769	769	완충녹지	
			기정	B8	축산리 640번지 일원	324	324	완충녹지	
	C	45,522	기정	C1	축산리 609번지 일원	530.2	530.2	완충녹지	
			기정	C2-1	축산리 610번지 일원	4,246.8	4,246.8	공업용지	·합병·분할가능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 분할은 최소 1,650㎡이상 허용)
			변경	C2-2	축산리 611번지 일원	4,029.2	2,310	공업용지	
			변경	C2-3	축산리 611번지 일원		1,719.2	공업용지	
			기정	C3-1	축산리 613번지 일원	4,730.8	4,730.8	공업용지	·합병·분할가능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 분할은 최소 1,650㎡이상 허용)
			변경	C3-2	축산리 612번지 일원	4,730.6	2,365.3	공업용지	
			변경	C3-3	축산리 612번지 일원		2,365.3	공업용지	
			기정	C4	축산리 614번지 일원	9,581.9	9,581.9	공업용지	
			기정	C5	축산리 615번지 일원	9,708.0	9,708.0	공업용지	
			기정	C6-1	축산리 616번지 일원	3,621.9	3,621.9	공업용지	·합병·분할가능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 분할은 최소 1,650㎡이상 허용)
			기정	C6-2	축산리 617번지 일원	2,833.2	2,833.2	공업용지	
			기정	C7	축산리 641번지 일원	1,074	1,074	완충녹지	
	기정	C8	축산리 640번지 일원	479	479	완충녹지			
	D	25,321	기정	D1	축산리 619번지 일원	596.1	596.1	공동이용용지	
			기정	D2	축산리 620번지 일원	6,237	6,237	완충녹지	
			변경	D3-1	축산리 621번지 일원	8,330.7	2,310	공업용지	·합병·분할가능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 분할은 최소 1,650㎡이상 허용)
			변경	D3-2	축산리 621번지 일원		2,310	공업용지	
변경			D3-3	축산리 621번지 일원	3,710.7		공업용지		
기정			D4	축산리 622번지 일원	7,101.6	7,101.6	공업용지		
기정			D5	축산리 623번지 일원	495.8	495.8	공동이용용지		
기정			D6	축산리 624번지 일원	2,851.1	2,851.1	유수지		
기정	D7	축산리 618번지 일원	665.2	665.2	공동이용용지				
E	27,639	기정	E1	축산리 647번지 일원	3,386	3,386	완충녹지		
		기정	E2	축산리 631번지 일원	7,758.9	7,758.9	공업용지	·합병·분할가능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 분할은 최소 1,650㎡이상 허용)	
		기정	E3	축산리 632번지 일원	8,025.2	8,025.2	공업용지		
		기정	E4	축산리 633번지 일원	8,628.6	8,628.6	공업용지		
F	47,541	기정	F1-1	축산리 628번지 일원	4,019.2	4,019.2	공업용지	·합병·분할가능 (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이상, 분할은 최소 1,650㎡이상 허용)	
		기정	F1-2	축산리 629번지 일원	4,485.7	4,485.7	공업용지		
		기정	F2	축산리 630번지 일원	8,125.2	8,125.2	공업용지		
		기정	F3	축산리 627번지 일원	8,458.9	8,458.9	공업용지		
		기정	F4	축산리 626번지 일원	8,021.2	8,021.2	공업용지		
		기정	F5	축산리 625번지 일원	6,946.4	6,946.4	공업용지		
			기정	F6	축산리 646번지 일원	7,364.8	7,364.8	완충녹지	
도로 및 구거 면적 31,416㎡ 제외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	A3, A4, B2~B6, C2~C6, D3, D4, E2~E4 F1~F5 (공업용지)	용도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되도록 권장		
		형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사용 권장 · 지붕의 경우 과란색 계열의 색채 사용 권장 · 냉난방기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여 가능한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 · 옥상층의 시설물(물탱크, 냉각탑, 기기실, 환기구 등)등의 경관 불량 요소는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단, 방송·통신용 시설 제외)		
		색채	주조색	·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열 사용 · 원색 사용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으로 할 것	
			강조색	·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건물의 확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건축선	·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D1, D5, D7 (공공시설용지)	용도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부대시설 -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관리사, 주차장 등)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되도록 권장		
		형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사용 권장 · 냉난방기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여 가능한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 · 옥상층의 시설물(물탱크, 냉각탑, 기기실, 환기구 등)등의 경관 불량 요소는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단, 방송·통신용 시설 제외)		
		색채	주조색	·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열 사용 · 원색 사용 금지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으로 할 것	
강조색			·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건물의 확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건축선	·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지정(단, 부대시설은 제외)				

## 3. 기타사항(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39,156.1		239,156.1	100.0	
공업용지	176,243.4		176,243.4	73.7	공장용지
공공시설용지	31,918.1		31,918.1	13.4	
도 로	26,674.5		26,674.5	11.2	단지내도로
지원·부대시설	1,757.1		1,757.1	0.7	공동이용시설
저류지	2,851.1		2,851.1	1.2	유수지
배수지	635.4		635.4	0.3	수도공급설비
녹지용지	30,994.6		30,994.6	12.9	
완충녹지	26,619.6		26,619.6	11.1	완충녹지
녹지(구거)	4,375		4,375	1.8	배수로

## 나) 옥외 광고물 계획

-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군산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용하되, 추가적인 설치 기준을 준수한다.
  - 옥상 간판, 돌출형 간판, 창문이용 간판 설치 금지
  - 가로형 간판 중 판류형은 원칙적으로 설치금지하고 입체형만 설치 가능
  - 지주 이용간판은 1개 획지에 1개까지 설치 가능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이 있는 경우,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안에 설치 불허

## 다) 교통처리계획

- 차량 진·출입 허용 및 불허구간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를 준용하여 불허구간을 지정하고, 허용구간은 기타 도로와 연결한 획지면을 허용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 불허 및 허용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진·출입 구간은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중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르며 불허구간 지정, 허용구간은 기타 도로와 연결한 획지면을 허용함.</li> <li>· 허용구간내 주차장,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추가 설치를 허용. 단, 농공단지 관리부서 및 해당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li> </ul>	

※군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 게재생략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변경 승인고시 (변경)

가. 농공단지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고시사항

- 명 칭 : 군산 임피농공단지
- 위 치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569-1번지 일원
- 면 적 : 239,156.1m<sup>2</sup>

※ 지형도면 및 전산자료 : 게재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별첨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련도서는 군산시 투자지원과(☎ 063-454-27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별첨)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 토지조서

토지의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현실적 인이용 상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 소	
계					240,667	239,187				
1	축산리	97-1	대	대	342	342	보전관리지역	최정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합정리 157-6	
2	축산리	97-2	답	전	76	76	보전관리지역	동상새마을회	읍내리 491-1	
3	축산리	101-1	임	임	1605	1605	보전관리지역	최정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합정리 157-6	
4	축산리	101-3	전	잡	1351	1351	보전관리지역	박용성	나운동 751-5 신한파크101호	
5	축산리	101-8	임	임	6075	6075	보전관리지역	최영권	명산동 7-7	
6	축산리	101-9	임	임	4471	4471	보전관리지역	한양조씨고부 공파농은종중	미원리 324	
7	축산리	102-1	묘	묘	516	516	보전관리지역	고천형빈	미원리 350	
8	축산리	102-2	전	전	1699	1699	보전관리지역	오세봉외3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881-28, 402호	
9	축산리	103-1	임	임	11831	11831	보전관리지역	조성길외1인	미원리 324	
10	축산리	104	창	창	1507	1507	보전관리지역	장민	축산리 104	
11	축산리	106	대	대	659	659	보전관리지역	장민	축산리 104	
12	축산리	106-1	답	잡	1090	1090	보전관리지역	김혜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13	축산리	109	답	잡	429	429	보전관리지역	조철희	임피면 미원리 350	
14	축산리	124-1	답	잡	346	346	보전관리지역	김혜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15	축산리	135-3	답	잡	85	85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16	축산리	136-3	도	대	6	6	보전관리지역	조남석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68-1	
17	축산리	136-4	도	도	10	10	보전관리지역	오창성	축산리 35	
18	축산리	136-5	도	잡	18	18	보전관리지역	오창성	축산리 35	
19	축산리	137-1	대	대	71	71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20	축산리	137-2	도	도	17	17	보전관리지역	오창성	축산리 35	
21	축산리	137-3	대	대	22	22	보전관리지역	군산시		
22	축산리	138-1	전	전	474	474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23	축산리	138-3	도	도	112	112	보전관리지역	강우현	읍내리 436	

토지의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현실적 인이용 상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 소	
24	축산리	138-4	대	대	50	50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25	축산리	138-6	전	전	373	373	보전관리지역	군산시		
26	축산리	138-7	전	전	84	84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27	축산리	139-1	도	도	7	7	보전관리지역	오창성	축산리 35	
28	축산리	139-2	대	대	612	612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29	축산리	140-1	답	답	1315	1315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30	축산리	141	대	대	1385	1385	보전관리지역	박혜숙	축산리 141	
31	축산리	142	전	답	747	747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32	축산리	143-1	임	도	155	155	보전관리지역	강병식		
33	축산리	143-2	임	임	4727	4727	보전관리지역	이용득	서수면 서수리 477	
34	축산리	143-4	임	임	5289	5289	보전관리지역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35	축산리	143-6	임	도	609	54	보전관리지역	군산시		
36	축산리	145-1	답	답	594	594	농림지역	정인창	축산리 189	
37	축산리	146-1	도	도	7	7	농림지역	국(건설부)		
38	축산리	146-2	도	도	7	7	농림지역	국(건설부)		
39	축산리	146-3	답	답	2238	2238	농림지역	박종호	축산리 189	
40	축산리	146-5	답	도	134	134	농림지역	군산시		
41	축산리	147-2	답	답	483	483	농림지역	정인창	축산리 189	
42	축산리	147-4	답	도	2	2	농림지역	군산시		
43	축산리	152-1	전	답	1031	1031	보전관리지역	백정덕	읍내리 251	
44	축산리	152-2	도	도	63	63	농림지역	진영권	축산리 433-2	
45	축산리	152-3	전	답	1191	1191	보전관리지역	백정덕	읍내리 251	
46	축산리	152-6	전	도	155	155	농림지역	군산시		
47	축산리	153	전	잡	184	184	보전관리지역	국(건교부)		
48	축산리	154-1	전	전	614	614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49	축산리	154-2	임	임	1454	1454	보전관리지역	임규석	임피면 축산리 7	
50	축산리	154-3	임	임	670	670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51	축산리	154-6	임	임	40	40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토지의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현실적 인이용 상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 소	
52	축산리	154-7	임	임	1188	1188	보전관리지역	한상재	축산리 35	
53	축산리	154-8	임	임	547	547	보전관리지역	김덕재	서수면 서수리 273-4	
54	축산리	154-9	임	임	586	586	보전관리지역	최일문	경암동 598	
55	축산리	154-10	임	임	108	108	보전관리지역	강병식		
56	축산리	154-11	임	임	477	477	보전관리지역	최무철	월하리 515-4	
57	축산리	154-14	전	전	522	522	보전관리지역	신동옥	139-2	
58	축산리	154-15	전	전	684	684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59	축산리	154-16	임	임	2303	2303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60	축산리	154-20	임	임	309	309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61	축산리	154-21	임	임	147	147	보전관리지역	군산시		
62	축산리	154-22	임	임	121	121	보전관리지역	군산시		
63	축산리	154-23	임	임	141	141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64	축산리	154-24	임	임	145	145	보전관리지역	한국농어촌공사		
65	축산리	155	전	대	2070	2070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66	축산리	173	전	전	495	495	보전관리지역	김덕봉외2인	송파구 삼전동 97-10	
67	축산리	173-2	전	전	78	78	보전관리지역	한국농어촌공사		
68	축산리	532-15	도	도	862	862	보전관리지역	국		
69	축산리	532-9	도	도	1369	660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70	축산리	559-1	답	답	1788	1788	농림지역	김순엽	경장동 517-9	
71	축산리	559-2	답	답	1848	1848	농림지역	김순엽	경장동 50-57	
72	축산리	559-3	답	답	2103	2103	농림지역	이일홍	127-7	
73	축산리	559-4	답	답	1980	1980	농림지역	한상돈	임피면 읍내리 516-1	
74	축산리	559-5	답	답	1847	1847	농림지역	한상돈	임피면 읍내리 516-1	
75	축산리	560-1	답	답	1836	1836	농림지역	진호권	127-7	
76	축산리	560-2	답	답	1242	1242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진호권	127-7	
77	축산리	560-3	답	답	2328	2328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유덕수	읍내리 218-4	
78	축산리	560-4	답	답	2118	2118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유덕수	읍내리 218-4	

토지의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현실적 인이용 상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 소	
79	축산리	560-5	답	답	2940	2940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한연수	읍내리 516-1	
80	축산리	561-1	답	답	3612	3612	농림지역	임규진	읍내리 329	
81	축산리	561-2	답	답	3752	3752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장인상	261	
82	축산리	562-1	답	답	2772	2772	농림지역	한상돈	읍내리 516-1	
83	축산리	562-2	답	답	3372	3372	농림지역	최현복	읍내리 299	
84	축산리	562-3	답	답	4067	4067	농림지역	최현복	읍내리 299	
85	축산리	562-4	답	답	1776	1776	농림지역	문두봉	전주 덕진구 송천동 2가 541-2 쌍용아파트 101-803호	
86	축산리	562-5	답	답	786	786	농림지역	박혜숙	141	
87	축산리	562-6	답	답	1182	1182	농림지역	최수풍	읍내리 271-1	
88	축산리	563-1	답	답	2568	2568	농림지역	이형식	읍내리 315	
89	축산리	563-2	답	답	3938	3938	농림지역	채응복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653-1	
90	축산리	563-3	답	답	3954	3954	농림지역	최전순	273	
91	축산리	563-4	답	답	3972	3972	농림지역	조남훈	읍내리 494-2	
92	축산리	563-5	답	답	4122	4122	농림지역	최수풍	읍내리271-1	
93	축산리	563-6	답	답	1902	1902	농림지역	조철희	임피면 미원리 350	
94	축산리	563-7	답	답	2562	2562	농림지역	유영우	서수면 서수리 1263	
95	축산리	563-8	답	답	4007	4007	농림지역	유길준	서수면 서수리 1263	
96	축산리	563-9	답	답	1500	1500	농림지역	유길준	서수면 서수리 1263	
97	축산리	563-10	답	답	1214	1214	농림지역	국(재정경제부)		
98	축산리	563-11	답	답	1236	1236	농림지역	국(재정경제부)		
99	축산리	568-1	답	답	2284	2068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 거지역	장화선외3인	익산시 마동 158-15삼호아파트 1-906	
100	축산리	568-2	답	답	2792	2792	생산녹지지역	장화선외3인	익산시 마동 158-15삼호아파트 1-906	
101	축산리	568-3	답	답	478	478	생산녹지지역	장화선외3인	익산시 마동 158-15삼호아파트 1-906	
102	축산리	568-4	답	답	1548	1548	생산녹지지역	김양순	읍내리 385	
103	축산리	568-5	답	답	738	738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104	축산리	568-6	답	답	2736	2736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토지의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현실적 인이용 상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 소	
105	축산리	568-7	답	답	2898	2898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106	축산리	568-8	답	답	4026	4026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107	축산리	568-9	답	답	4000	4000	생산녹지지역	김정호	서수면 서수리 1285	
108	축산리	568-10	답	답	4024	4024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곽미영외3인	대전시 동구 홍도동 16-1 현암아파트 103동 402호	
109	축산리	568-11	답	답	1033	1033	농림지역	진병덕	축산리 356-1	
110	축산리	568-12	답	답	2941	2941	농림지역	진병덕	축산리 356-1	
111	축산리	568-13	답	답	1856	1856	농림지역	채수환	읍내리 48-4	
112	축산리	568-14	답	답	2187	2187	농림지역	채수환	읍내리 48-4	
113	축산리	569-1	답	잡	832	832	생산녹지지역	이용기	대야면 산월리 389	
114	축산리	569-2	답	답	911	911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115	축산리	569-3	답	답	2480	2480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116	축산리	569-4	전	전	2613	2613	생산녹지지역	이현진	동산동 1053-1 제일아파트	
117	축산리	569-5	답	답	2495	2495	생산녹지지역	이천식	읍내리 315	
118	축산리	569-6	답	답	994	994	생산녹지지역	이천식	읍내리 315	
119	축산리	569-7	답	답	1138	1138	생산녹지지역	한이성	읍내리 318	
120	축산리	569-8	답	답	2088	2088	생산녹지지역	한이성	읍내리 318	
121	축산리	569-9	답	답	1557	1557	생산녹지지역	한이성	읍내리 318	
122	축산리	569-10	답	답	1756	1756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123	축산리	569-11	답	답	1989	1989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124	축산리	569-12	답	답	1665	1665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장남중외2인	미원리 331	
125	축산리	569-13	답	답	498	498	농림지역	진병윤	인천시 남구 용현동 481	
126	축산리	569-14	답	답	2161	2161	농림지역	진병윤	인천시 남구 용현동 481	
127	축산리	570-1	답	답	2864	2864	농림지역	임규진	읍내리 329	
128	축산리	570-2	답	답	1200	1200	농림지역	채수환	읍내리 450-4	
129	축산리	570-3	답	답	4085	4085	농림지역	차상덕	읍내리 262	
130	축산리	570-4	답	답	4045	4045	농림지역	장인상	241-7	
131	축산리	570-5	답	답	1600	1600	농림지역	노성례	285-2	

토지의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현실적 인이용 상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 소	
132	축산리	570-6	답	답	2426	2426	농림지역	노성례	285-2	
133	축산리	570-7	답	답	1644	1644	농림지역	유선준	읍내리 25	
134	축산리	583	구	구	2243	2243	농림지역	국(농수산부)		
135	축산리	584-4	도	도	1562	1562	농림지역	국(농수산부)		
136	축산리	585-4	구	구	3093	3093	농림지역	국(농수산부)		
137	축산리	586	도	잡	370	370	보전관리지역	국(농수산부)		
138	축산리	587	도	잡	136	136	농림지역	국(농수산부)		
139	축산리	588	구	구	582	582	농림지역	국(농수산부)		
140	축산리	589	구	구	2296	2296	농림지역	국(농수산부)		
141	축산리	590-1	도	도	2323	2323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국(농수산부)		
142	축산리	591	구	구	754	754	계획관리지역 재정밀지구지역	국(농수산부)		
143	축산리	591-7	구	구	148	148	계획관리지역	국(농수산부)		
144	축산리	591-8	구	구	4719	4719	계획관리지역	국(농수산부)		
145	축산리	591-9	구	구	935	935	계획관리지역	국(농수산부)		
146	축산리	591-10	구	구	1,619	1,619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국(농수산부)		
147	축산리	592	구	구	1856	1856	계획관리지역 재정밀지구지역	국(농수산부)		
148	축산리	593-1	도	도	1941	1941	계획관리지역	국(농수산부)		

## 라. 지장물조서

## 물건의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 소	
계								
1	축산리	97-1	주택		1채	최정민	평택시 팽성읍 합정리 157-6	
2	“	97-1	헛간		1채	최정민	평택시 팽성읍 합정리 157-6	
3	“	97-2	깨		76㎡	동상새마을회	읍내리 49-1	
4	“	101-1	고추		1605㎡	최정민	평택시 팽성읍 합정리 157-6	
5	“	101-3	잡종지		1351㎡	박용성	나운동751-5 신한파크 101호	
6	“	101-8	임야		607㎡	최영권	명산동 7-7	
7	“	101-9	묘		7기	함양조씨고부 공파동은종중	미원리 324	
8	“	102-1	묘		8기	고천형빈	미원리 350	
9	“	102-2	깨		1699㎡	오세봉외3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881-28, 402호	
10	“	103-1	묘		13기	조성길외1인	미원리324	
11	“	104	지평선파렛트		1507㎡	장만	축산리 104	
12	“	106	주택		1채	장민	축산리 104	
13	“	106-1	흑염소		1090㎡	김혜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14	“	106-1	닭		1090㎡	김혜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15	“	106-1	가축시설		1090㎡	김혜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16	“	109	잡종지		429㎡	조철희	임피면 미원리 350	
17	“	124-1	지평선파렛트		346㎡	김혜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18	“	135-3	감나무		85㎡	오정일	축산리 139-2	
19	“	135-3	밤나무		85㎡	오정일	축산리 139-2	
20	“	136-3	대지		6㎡	오창성	축산리 35	
21	“	136-4	대지		10㎡	오창성	축산리 35	
22	“	136-5	소나무		4그루	오창성	축산리 35	
23	“	137-1	대지		71㎡	오정일	축산리 139-2	
24	“	137-2	대지		17㎡	오창성	축산리 35	
25	“	137-3	도로		22㎡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888	
26	“	138-1	신대륙자원		474㎡	오정일	축산리 139-2	
27	“	138-3	도로		112㎡	강우현	읍내리 436	
28	“	138-4	도로		50㎡	오정일	축산리 139-2	
29	“	138-6	도로		373㎡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888	
30	“	138-7	대지		84㎡	오정일	축산리 139-2	
31	“	139-1	대지		7㎡	오창성	축산리 35	

## 물건의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 소	
32	축산리	139-2	주택		1채	오정일	축산리 139-2	
33	“	139-2	대추		612㎡	오정일	축산리 139-2	
34	“	139-2	대파		612㎡	오정일	축산리 139-2	
35	“	139-2	콩		612㎡	오정일	축산리 139-2	
36	“	140-1	벼		1315㎡	오정일	축산리 139-2	
37	“	141	주택		2채	전북은행		
38	“	141	창고		1채	전북은행		
39	“	141	헛간		1채	전북은행		
40	“	142	벼		747㎡	오정일	축산리 139-2	
41	“	143-1	도로		155㎡	강병식		
42	“	143-2	자재야적장		4727㎡	군산시		
43	“	143-2	묘		10기	군산시		
44	“	143-4	묘		8기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45	“	143-4	고추		5289㎡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46	“	143-4	깨		5289㎡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47	“	143-4	배추		5289㎡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48	“	143-6	도로		609㎡	군산시		
49	“	145-1	벼		594㎡	정인창	축산리 189	
50	“	146-1	도로		7㎡	국(건설부)		
51	“	146-2	도로		7㎡	국(건설부)		
52	“	146-3	벼		2238㎡	박종호	축산리 189	
53	“	146-5	도로		134㎡	군산시		
54	“	147-2	벼		483㎡	정인창	축산리 189	
55	“	147-4	도로		2㎡	군산시		
56	“	152-1	벼		1031㎡	백정덕	읍내리 251	
57	“	152-2	도로		63㎡	진영권	축산리 433-2	
58	“	152-3	벼		1191㎡	국민건강보험공단		
59	“	152-6	도로		155㎡	군산시		
60	“	153	잡종지		184㎡	국(건교부)		
61	“	154-1	묘		2기	재정경제부		
62	“	154-1	비닐하우스		1동	재정경제부		
63	“	154-2	묘지		2기	임규석	임피면 축산리 7	
64	“	154-2	비닐하우스		2동	임규석	임피면 축산리 7	
65	“	154-2	이동화장실		1채	임규석	임피면 축산리 7	
66	“	154-2	컨테이너박스		1채	임규석	임피면 축산리 7	
67	“	154-3	묘지		3기	재정경제부		

## 물건의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 소	
68	축산리	154-6	도로		40㎡	재정경제부		
69	“	154-7	묘		5기	한상재	축산리 35	
70	“	154-8	묘		5기	김덕재	서수면 서수리 273-4	
71	“	154-9	임야		586㎡	최우봉외1인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58-2	
72	“	154-10	잡종지		108㎡	강병식		
73	“	154-11	묘		1기	최무철	월하리 515-4	
74	“	154-14	움막		1채	신동욱	축산리 139-2	
75	“	154-14	잡종지		522㎡	신동욱	축산리 139-2	
76	“	154-15	묘지		1기	국(재정경제부)		
77	“	154-16	잡종지		2303㎡	국(재정경제부)		
78	“	154-16	전		2303㎡	국(재정경제부)		
79	“	154-16	묘지		2기	국(재정경제부)		
80	“	154-20	도로		309㎡	국(재정경제부)		
81	“	154-21	도로		147㎡	군산시		
82	“	154-22	도로		121㎡	군산시		
83	“	154-23	도로		141㎡	국(재정경제부)		
84	“	154-24	잡종지		145㎡	한국농어촌공사		
85	“	155	신대륙자원		2070㎡	오정일	축산리 139-2	
86	“	173	깨		495㎡	김덕봉외2인	송파구 삼전동 97-10	
87	“	173-2	깨		78㎡	한국농어촌공사		
88	“	532	지평선파렛트		859㎡	국		
89	“	532-9	도로		660㎡	국(재정경제부)		
90	“	559-1	벼		1788㎡	김순엽	경장동 517-9	
91	“	559-2	벼		1848㎡	이일홍외1인	읍내리 328-3	
92	“	559-3	벼		2103㎡	이일홍	127-7	
93	“	559-4	벼		1980㎡	한상돈	임피면 읍내리 516-1	
94	“	559-5	벼		1847㎡	한상돈	임피면 읍내리 516-1	
95	“	560-1	벼		1836㎡	진호권	127-7	
96	“	560-2	벼		1242㎡	진호권	127-7	
97	“	560-3	벼		2328㎡	유덕수	읍내리 218-4	
98	“	560-4	벼		2118㎡	유덕수	읍내리 218-4	
99	“	560-5	벼		2940㎡	한연수	읍내리 516-1	
100	“	561-1	벼		3612㎡	임규진	읍내리 329	
101	“	561-2	벼		3752㎡	장인상	261	
102	“	562-1	벼		2772㎡	한상돈	읍내리 516-1	
103	“	562-2	벼		3372㎡	최현복	읍내리 299	

## 물건의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 소	
104	축산리	562-3	벼		4067㎡	최현복	읍내리 299	
105	“	562-4	벼		1776㎡	문두봉	덕진구 송천동 2가 541-2 쌍용아파트 101-803	
106	“	562-5	벼		786㎡	박혜숙	141	
107	“	562-6	벼		1182㎡	최수풍	읍내리 271-1	
108	“	563-1	벼		2568㎡	이형식	읍내리 315	
109	“	563-2	벼		3938㎡	채응목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653-1	
110	“	563-3	벼		3954㎡	최진순	273	
111	“	563-4	벼		3972㎡	조남훈	읍내리 494-2	
112	“	563-5	벼		4122㎡	최수풍	읍내리 271-1	
113	“	563-6	벼		1902㎡	조철희	임피면 미원리 350	
114	“	563-7	벼		2562㎡	유영우	서수면 서수리 1263	
115	“	563-8	벼		4007㎡	유길준	서수면 서수리 1263	
116	“	563-9	벼		1500㎡	유길준	서수면 서수리 1263	
117	“	563-10	벼		1214㎡	국(재정경제부)		
118	“	563-11	벼		1236㎡	국(재정경제부)		
119	“	568-1	벼		2068㎡	장화선외3인	익산시 마동 158-15 삼호아파트 1-906	
120	“	568-2	벼		2792㎡	장화선외3인	익산시 마동 158-15 삼호아파트 1-906	
121	“	568-3	벼		478㎡	장화선외3인	익산시 마동 158-15 삼호아파트 1-906	
122	“	568-4	벼		1548㎡	김양순	읍내리 385	
123	“	568-5	벼		738㎡	송영자	읍내리 23-1	
124	“	568-6	벼		2736㎡	송영자	읍내리 23-1	
125	“	568-7	벼		2898㎡	송영자	읍내리 23-1	
126	“	568-8	벼		4026㎡	송영자	읍내리 23-1	
127	“	568-9	벼		4000㎡	김정호	서수면 서수리 1285	
128	“	568-10	벼		4024㎡	곽미영외3인	대전시 동구 홍도동 16-1 현암아파트 103동 402호	
129	“	568-11	벼		1033㎡	진병덕	축산리 356-1	
130	“	568-12	벼		2941㎡	진병덕	축산리 356-1	
131	“	568-13	벼		1856㎡	채수환	읍내리 48-4	
132	“	568-14	벼		2187㎡	채수환	읍내리 48-4	
133	“	569-1	묘목		832㎡	이용기	대야면 산월리 389	
134	“	569-2	벼		911㎡	송영자	읍내리 23-1	
135	“	569-3	벼		2480㎡	송영자	읍내리 23-1	
136	“	569-4	콩		2613㎡	이현진	동산동 1053-1 제일아파트	
137	“	569-5	벼		2495㎡	이천식	읍내리 315	
138	“	569-6	벼		994㎡	이천식	읍내리 315	

## 물건의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139	축산리	569-7	벼		1138㎡	한이성	읍내리 318	
140	“	569-8	벼		2088㎡	한이성	읍내리 318	
141	“	569-9	벼		1557㎡	한이성	읍내리 318	
142	“	569-10	벼		1756㎡	송영자	읍내리 23-1	
143	“	569-11	벼		1989㎡	송영자	읍내리 23-1	
144	“	569-12	벼		1665㎡	장남중외2인	미원리 331	
145	“	569-13	벼		498㎡	진병윤	인천시 남구 용현동 481	
146	“	569-14	벼		2161㎡	진병윤	인천시 남구 용현동 481	
147	“	570-1	벼		2864㎡	임규진	읍내리 329	
148	“	570-2	벼		1200㎡	채수환	읍내리 450-4	
149	“	570-3	벼		4085㎡	차상덕	읍내리 262	
150	“	570-4	벼		4045㎡	장인상	241-7	
151	“	570-5	벼		1600㎡	노성례	285-2	
152	“	570-6	벼		2426㎡	노성례	285-2	
153	“	570-7	벼		1644㎡	유선준	읍내리 25	
154	“	583	구거		2243㎡	국(농수산부)		
155	“	584	도로		1532㎡	국(농수산부)		
156	“	585	구거		2975㎡	국(농수산부)		
157	“	586	잡종지		370㎡	국(농수산부)		
158	“	587	잡종지		136㎡	국(농수산부)		
159	“	588	구거		582㎡	국(농수산부)		
160	“	589	수로관	B=0.5, H=0.5	2296㎡	국(농수산부)		
161	“	590	도로		2256㎡	국(농수산부)		
162	“	591	구거 컨테이너박스		7791㎡	국(농수산부)		
163	“	592	라이닝		1871㎡	국(농수산부)		
164	“	593	도로		1976㎡	국(농수산부)		

군산시 고시 제2016-36호

##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년 3월 8일

### 군 산 시 장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산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신시도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7번지 외470필(442,524㎡)
4. 대행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063-454-4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6 - 37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수리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

## 군 산 시 장

### 1. 점용·사용 협의를 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

###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해상교통 안전 도모 및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설치  
나. 공사개요

- 1) 위 치 :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501번지 앞 공유수면(간출암)
- 2) 사 업 비 : 351백만원
- 3) 공사내용 : 항로표지 설치(등표)

###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6. 3월
- 준공예정일 : 2016. 9월

###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16. 3. 14.

군산시 공고 제2016 - 457호

##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5.

##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6. 3. 15.
2.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2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	군산시장의인 수송동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우레탄 (특수고무)	통합민원 발급기 신규도입	수송동
조	군산시수송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우레탄 (특수고무)	통합민원 발급기 신규도입	수송동